



보도자료

보도

7.23일(목) 석간

배포

2020.7.22(수)

한국은행
대한민국

책임자	금융위 은행과장 박민우(02-2100-2950)	담당자	송용민 사무관(02-2100-2953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준수(02-3145-8020)		김욱배 팀장(02-3145-8022)
	금감원 신용감독국장 조성민(02-3145-8370)		김충진 팀장(02-3145-8380)

제 목 : 은행업감독규정 개정

-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◆ 금융위원회는 20.7.22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.

<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>

- ① 은행의 경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
- ②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
- ③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(ABSTB) 매입약정 추가

1. 추진 배경

□ 금융위는 중기부 협조요청사항, 신용정보법 개정('20.2.4) 내용 및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(7.22일 금융위 정례회 의결)하였습니다.

2. 주요 내용

□ 은행의 경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

※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 대행 업무("참고" 참조)를 은행 경영업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

○ (현행) 은행의 경영 가능업무가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 정책성 상품*의 판매대행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

- * 1)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 (노란우산공제)
- 2)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 (내일채움공제)

- **(개선)** 은행 겸 영업무에 "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·판매 대행업무"로서 다음 업무를 추가
 - ①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
 - ②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
-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*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등을 추가
 - *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%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(은행법 제37조제2항)

※ 신용정보법 개정(20.2.4)으로 기존에 신용정보업에 포함되었던 채권 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*이 신설

 - *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(신용정보법 제2조 8의2)
- **(현행)**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중 하나로 신용정보법상 신용 정보업을 열거
- **(개정)**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
-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(ABSTB) 매입약정을 추가
 - * 전자단기사채는 실물로 발행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한 기업어음(CP)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'13년 도입된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는 사채권

<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(Asset-Backed Short-Term Bond) 매입약정 구조 >

```

graph LR
    AL[자산보유자] -- "기초자산 양도" --> SPC[SPC]
    SPC -- "ABSTB발행" --> I[투자자]
    I -- "현금" --> SPC
    B[은행] -- "ABSTB 매입약정*" --> SPC
  
```

 - * 통상 기초자산의 만기는 장기이고 전자단기사채의 만기는 단기기 때문에 차환발행리스크가 발생
 - 은행의 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은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차환발행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채권의 신용을 보강함

- (현행)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“자산담보부기업어음(ABCP) 매입약정”은 명시되어 있으나, “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(ABSTB) 매입약정”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
- (개선)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ABSTB매입약정을 추가
 - ABSTB의 경제적 실질은 ABCP와 동일^{*}하다는 점에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
 - * ABCP와 달리 기업어음이 아닌 전단채가 발행되지만, 은행이 단기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

3. 기대 효과

-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되어,
-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* 경영을 희망하는 은행은 금융위에 경영업무 신고 이후 영위 가능
-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업이 추가됨에 따라,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.
 - * 단,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%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 필요
- ABSTB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^{*}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* 동일한 개인·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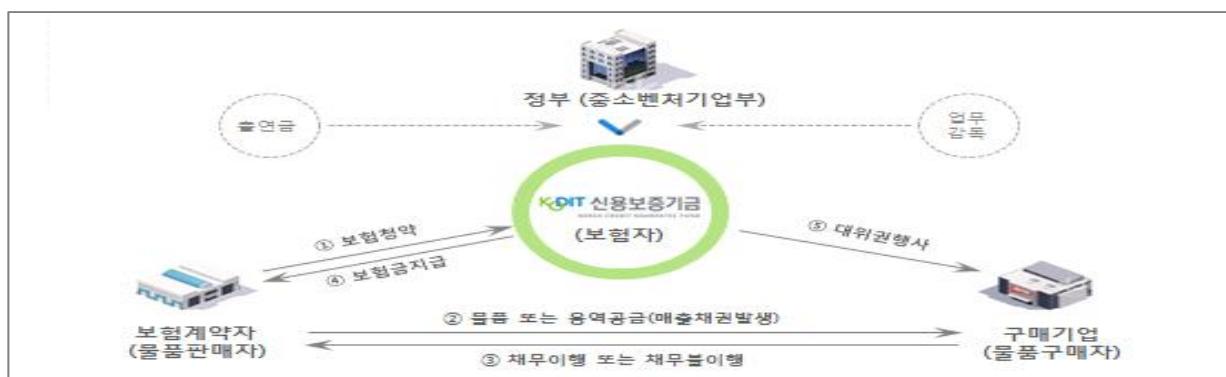
4. 향후 일정

- 경영업무 추가,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고시 즉시(7.23일),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8.5일^{*}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* '20.2.4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

① 매출채권보험 개요

- **(의의)** 중소기업이 물품·용역 제공후 취득한 매출채권 관련, 구매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
 - * 외상거래 손실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→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망 역할 수행
- **(운영)**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 (신용보증기금 내 별도계정 설치)
 - * 중기부 예산사업 중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

< 매출채권보험 운영 체계 >



② 은행권에 위탁하는 업무

-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영위하는 업무 중 모집대행 업무(단순 광고, 상품설명, 보험계약 권리)

< 은행권 업무위탁시 신용보증기금, 은행 업무 범위 >

업무	세부업무	AS-IS	TO-BE
모집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순광고 • 상품설명 • 보험계약 권리 • 보험 제안서 설계 	신용보증기금	<p>신용보증기금 은행</p> <p>신용보증기금</p>
청약·승낙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약관 교부·설명 등 	신용보증기금	신용보증기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해외감염병
NOW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